

의안번호	2203290
의 퇴 인	문대림 의원
회 답 일	2024. 12. 26.
추계번호	24A33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수급과 안보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¹⁾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섬지역에 분산에너지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①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²⁾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1) 분산에너지란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전국적인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임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하여 연구용역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②섬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³⁾으로 지정하여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은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섬지역의 수와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투입 계획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재정사업 실시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섬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⁴⁾ 다만, 개정규정과 유사한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인 도서·벽지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⁵⁾”을 실시하고 있음
 - － 해당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며, ①도서지역에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결손비(=비용-수익)와 ②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발전소 건설 및 계통연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개요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현행법 제33조 및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해당 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 4)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5139-30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섬지역에 한정된 지원사업이 아니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지원센터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5) 농어촌전기공급사업(5457-301), 전력산업기반기금

- 이처럼 유사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될 신규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재량 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섬지역의 수와 지원 사업의 내용 및 범위도 재원 추가 투입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은 약 1,460억 1,600만원이며, 이 중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약 1,445억 6,300만원,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 예산은 약 14억 5,300만원임
 - * [참고자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개요

- 이에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 (사업목적)

- 국민생활 필수 재화인 전기를 농어촌의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사회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농어촌경제발전을 도모

□ (근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사업 시행)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책임수행 지속
- 운영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적자사업구조로 민간투자 유도 불가

2. 사업구분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①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 지자체·한전이 관리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비(비용-수익)를 지원하는 사업
 - 한전 관리도서 운영결손비 지원: 연료비, 투자비,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 지자체 관리도서 운영결손비 지원: 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특별비용
 - 자가발전시설(지자체도서+주민도서) 기술지원: 돌발고장복구, 정기순회점검 등

②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벽지에 전기공급설비 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신규 전기공급공사비(발전소 건설, 계통연계)지원
 - * 공사비 부담비율(기금:지자체) 약 75% : 25%
 - * 전기공급방법 : 자가발전소(디젤엔진, 태양광, 풍력) 건설, 배전선로·해월철탑·해저케이블 연계
 - 이·폐농, 대용량 사용자 재정융자금 상환액 보전

□ (지원범위) 전기 미공급지역 신규공급, 자가발전도서 운영비 지원

기능별 분류	대상지역	사업내용	전력기금 지원범위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	전기 미공급지역	• 상시공급 전력시설 설치	75% (지자체 25%)
		10호이상 도서 자가발전소 건설	
		3호이상 도서·벽지 한전 계통 연장	
	이폐농지역	• 이폐농·대용량 고객의 미상환 재정융자금 보전	100%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125개 도서)	지자체도서 (22개)	• 운영결손액 (운영비-수익) 지원 • 정기점검, 돌발고장복구 등 기술지원 • 발전소 양수·양도 (지자체↔한전) 추진	100%
	주민도서 (38개)	• 정기점검, 돌발고장복구 등 기술지원	100%
	한전도서 (65개)	• 운영결손액 (운영+투자비-수익) 지원	100%

3. 사업대상 : 전국 자가발전도서(125개)

□ (한전도서) 울릉도 등 주로 대형도서이며 도서당 운영비는 약 3억 ~ 200억원

○ 운영비는 연료비(54%), 지급수수료(34%)가 높은 비율이며 약 88%가 경직성 비용

□ (지자체도서) 시·군청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훈령을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받음

○ 운영비는 인건비(49%)와 수선유지비(26%)가 높은 비율이며 약 75%가 경직성 비용

□ (주민도서) : 고객 수가 적은 소형도서를 지역주민 자치로 운영(기금 일부 지원)

관리주체	도서수 (개)	고객호수 (호)	설비용량 (kW)	기금실적 (2022년, 억원)	사업비 지원여부	
					결손비지원	기술지원
한전	65 (52%)	37,959 (95%)	97,823 (92%)	1,600 (93%)	○	×
지자체	22 (18%)	1,901 (4%)	7,964 (7%)	120 (6%)	○	○
주민	38 (30%)	158 (1%)	1,433 (1%)	11 (1%)	×	○
합계	125	40,018	107,220	1,731	신규 도서·벽지 75% 지원	

주: 2023년 12월 기준

4.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2023	2024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175,358	144,563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168	1,453
합계	175,526	146,016

주: 그린뉴딜 사업 예산을 제외한 금액

5. 2023년 한전관리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실적

(단위: 억원, 원/kWh)

수익(A)	운영비(B)	결손액(B-A)	원가회수율(A/B)	판매단가	발전원가	종합원가
400	1,760	1,360	22.7%	145.15	556.88	650.90

자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의안번호 제3290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